

[] 등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청서
[] 변경등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본 신청서의 작성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처리절차



신청인

민원실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